



日本, SW情報센터 設立 文化廳長官 指定 登錄事業등 展開

최근 日本通産·文部省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소프트웨어(SW)프로그램의 登錄사무와 유통촉진을 위하여 사단법인 「소프트웨어정보센터(가칭)」를 설립, 지난 4月 1일부터 登錄등의 업무를 시작했다.

이 센터는 소프트웨어프로그램의 權利보호를 위한 著作權法개정시행(86年 10月)에 따라 文化廳장관의 지정에 의한 登錄사업등을 전개하게 된다.

컴퓨터프로그램을 開發·製作한 기업과 개인은 登錄을 필하므로써 權利侵害나 소송등에서 이를 입증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우수 소프트웨어에 대한 표창(매년 10월)·소프트웨어의 보급활동·권리보호에

관한 調査研究등도 행하게 된다.

이 등록제도는 기본소프트웨어 및 어플리케이션등의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登錄수수료는 1건당 2만엔.

登錄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일정한 수속을 밟으면 방식審査가 행해지고, 프로그램 등록 원부에 기재되며, 프로그램은 마이크로필립의 형태로 著作權보호기간과 마찬가지로 50년간 보관된다. 공공기관이 「權利的 발생」을 확정함으로써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 신용이 높아진다는 것 외에도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登錄番號만 있으면 복잡한 수속을 별도로 밟을 필요가 없는등 장점이 많다.

또한 「權利的 移轉登錄」도

큰 장점인 바, 컴퓨터이용자가 소프트웨어를 開發한 해당회사에 발주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경우 사용자가 소프트웨어회사에 著作權을 양도해주는 형태를 취한다.

이때에 사용자가 移轉登錄을 하면 소프트웨어회사가 같은 형태로 他社에 팔 경우 著作權위반으로 제소할 수 있다.

이밖에 화제등으로 프로그램이 소실될 경우에도 등록해 두면 복제물이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대응할 수가 있다.

그러나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마이크로필립화를 어떻게 하는가. 각기업들이 마이크로필립을 행하기 위해 장치를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경비부담등에 문제가 있다. <☞>

(案) 外國出願費用補助 申請 (內)

目的 : 우리나라 國民의 外國出願을 勸獎하기 위한 出願費用을 補助하는데 있음.

申請資格 : 外國에 特許 또는 實用新案出願을 한 대한민국의 國民

申請期間 : 1987. 5. 1~5. 30

申請對象 : 1986. 11. 1~1987. 4. 30사이의 外國出願費用送金事實이 있는 外國出願發明 및 考案

交付基準

◎當該年度 豫算의 範圍內에서 出願 1件當40萬원을 交付하되 出願費用이 80萬원 未滿일 경우 50%交付.

◎申請人 1人에 대하여 5件까지 認定함.
交付金 支給 : 接受磨勘日로부터 1個月 以內

※ 其他 詳細한 事項은 韓國發明特許協會 發明振興部(557-1077~8)로 問議하시기 바랍니다.